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19 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동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수납액 (B)	B/A (%)	지출액 (C)	C/A (%)	차기이월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3,740,358	36,330,292	107.68	31,115,605	92.22	5,214,687	15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B/A (%)	수납액 (C)	C/A (%)	잉여금 (D)=(C)-(A)	미수 납액 (E)=(B)-(C)	E/A (%)
합계	33,740,358	36,657,852	108.65	36,330,292	107.68	2,589,934	327,560	0.97
현년도	28,411,974	30,454,207	107.19	30,250,013	106.47	1,838,039	204,194	0.72
전기미수금	100,000	975,261	975.26	851,895	851.9	751,895	123,366	123.37
전기이월액	5,228,384	5,228,384	100	5,228,384	100	-	-	-

○ 세출결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불 용 액 (D)	비율 (%)	
			(C)	C/A (%)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3,740,358	31,115,605	92.22	2,331,797	6.91	292,956	0.87

○ 차기이월금 처리상황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계	건설개량 이 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잉여금+불용액)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5,214,687	1,076,440	-	1,255,357	2,882,890

3. 검토결과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기이월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740,358	36,330,292	31,115,605	5,214,687	

○ 201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 예산액은 337억 4천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363억 3천만원,
- 세출결산액은 311억 15백만원이고,
- 차기이월액은 52억 14백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740,358	36,657,852	36,330,292	327,560	

- 세입결산액은 363억 3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107.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3억 27백만원입니다.

□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740,358	31,115,605	2,331,797	292,956	

- 세출결산액은 311억 15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3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이며 불용액은 2억 9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총괄

- 수입예산 결산액은 363억 3천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71억 69백만원, 자본적수입 239억 33백만원,
이월재원 52억 28백만원입니다.
- 지출예산 결산액은 311억 15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66억 11백만원, 자본적 지출 197억 46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47억 58백만원입니다.
-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75억 78백만원, 수입 287억 52천만원
지출 311억 15백만원, 차기이월액 52억 14백만원입니다.

□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는 2,571억 77백만원으로 전기대비 5.4%인 138억 8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27억 33백만원이 감소한 61억 44백만원으로 예산운용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 ▶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166억 21백만원이 증가한 2,510억 33백만원으로 방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평창군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구축사업 등의 건설중인 자산의 구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2백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이며,
- 자본총계는 2,571억 74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38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전입금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 총수익은 73억 98백만원으로
 -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0.3% 감소한 67억 69백만원이고
 -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2.1% 감소한 6억 29백만원입니다.
- 총비용은 147억 36백만원으로
 -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17억 93백만원이 증가한 134억 87백만원
 -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69백만원이 증가한 12억 49백만원입니다.
- 73억 3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급수수의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적 요	금액(천원)	연간조정량(m ³)	m ³ 당요금(원)
급수수익(상수도요금수입)	6,227,123	4,105,202	1,516.89
총괄원가	23,363,253	4,105,202	5,691.13
톤당 손실			4,174.24
요금현실화율(%)			26.65
요금인상요인(%)			275.19

- 연간조정량은 4,105,202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62억 27백만원으로 톤당 요금은 1,516.89원입니다.
-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233억 63백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5,691.13원으로, 결함액은 171억 36백만원이며 275.19%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연간생산량은 6,475,164톤이며, 연간조정량은 4,105,202톤으로 유수율은 63.4%로 전기 대비 3.78% 감소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업무를 201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 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서 불리한 여건입니다.
- 2019년 말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42,106명이고 급수인구는 34,624명으로 급수 보급율은 82.2%입니다.

수돗물은 1일 평균 1만 8천톤, 연간 총 647만 5천톤을 생산하며, 총괄원가는 233억 63백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5,691.13원, 공급단가는 톤당 1,516.89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은 275.19%입니다.

- 2019년도 급수수익은 62억 27백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26.7%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전년 30.5%회수) 3.8%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35억 75백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으며
- 또한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전년대비 14억 24백만원(전년대비 17.17%)이 증가하였으며, 총 영업비용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동설비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원가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용 대비 감가상각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금액	영업비용대비 비율
2019년	14,240	8,292	58.3%
2018년	12,532	6,868	54.8%
증감액	1,708	1,424	-

-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징수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3.78%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유수율이 향상되면 그만큼 누수량이 줄어들어 낭비되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3년 유수율 현황〉

구분	연간생산량(톤)	연간조정량(톤)	유수율(%)
2019년	6,475,164	4,105,202	63.4%
2018년	6,253,183	4,201,138	67.18
2017년	5,152,613	3,953,215	73.72

- 상수도 수용가 수도요금 미수금은 총 3억 28백만원으로 2017년 이전 체납금이 8천만원, 2018년 43백만원, 2019년 2억 5천만원으로 체납금 징수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